

의안번호	2201691
의 피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4.7.18.
추계번호	24B1953

교통정책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도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0억원, 2029년 51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122억원(연평균 24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도교통계획 수립 (안 제17조)	-	20	-	-	-	20	4
시·군교통계획 수립 (안 제18조)	-	-	51	51	-	102	20
합계	-	20	51	51	-	122	24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기술 개발·보급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과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1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조성, 기술도입·확산 등 모빌리티 혁신체계 수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 개발, 전문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5조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 단위로 국가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7조 (도교통계획의 수립)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함. 다만, 도지사는 5년마다 도교통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제1항) 1.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2. 관할구역에 대한 교통 수요 및 공급 전망 3. 관할구역의 교통시설 배치·규모·설치 현황 및 전망 4. 관할구역의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구역의 시·군 간 교통수단의 연계 및 강화 6. 도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8조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도교통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할 구역의 시·군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군교통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의 특성 및 교통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1.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교통수단간 수요 현황과 공급 전망 3.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비수의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6. 시·군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량규정 의무규정
7	안 제20조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및 시·군교통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8	안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교통계획의 평가 대상 및 기준)	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교통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함(제1항)	
9	안 제24조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대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25조 (교통서비스의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교통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1	안 제2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통계획의 평가 결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국가의 중요 교통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2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됨(제2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3항)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3	안 제2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의무규정
14	안 제30조 (지방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일부 조문은 현행법 규정 사항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조문별 추계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2] 재정수반조문별 현행법 비교 및 추계현황

제정안	현행법	추계여부
안 제10조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 (미대상) 현행법 조문
안 제11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정안	현행법	추계여부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안 제19조 (교통서비스 조사·평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국가교통조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안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 협력)	
안 제15조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 (미대상) 부칙 제4조 ¹⁾ 는 동 계획이 수립될 경우 종전의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은 수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종전 계획수립비용이 절감될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미발생
안 제17조 (도교통계획의 수립) 안 제18조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신설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안 제20조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신설	• (제3호)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등이 교통계획 수립 일정 이 불확정적이어서 공청회를 개최비용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22조 (교통계획의 평가 대상 및 기준) 안 제24조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안 제25조 (교통서비스의 평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국가교통조사)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미대상) 현행법 조문
안 제2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2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2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미대상) 현행법 조문

제정안	현행법	추계여부
치 등)	제109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0조 (지방교통위원회)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 조문별 사업은 현시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가 가능한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 대한 추계 결과를 제시함
- (안 제17조) 도지사가 20년 단위로 도교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도교통계획을 필요한 경우 변경하게 될 때 연구용역 사업비 소요가 예상
 - 추계 첫 해에 9개 도²⁾에서 20년 단위의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사업비는 유사사례를 참고함
 - 유사사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평균 사업비 2.2억원
 - 2026년에 국가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이듬해인 2027년 9

1) 제4조(국가교통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계획	종전의 계획
국가교통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2) 6개의 도(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3개 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 시도에서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유사사례: 시·도 단위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비(백만원)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3	180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	300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1	200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1	199
평균		220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교통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도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도교통계획 수립비용	-	1,980	-	-	-	1,980

- (안 제18조) 시장·군수·구청장이 20년 단위로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 사업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및 도교통계획에 따라 시·군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고, 5년마다 시·군교통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교통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할지 알 수 없으므로, 226개 시군구에서 2개년 동안 균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9조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절감비용을 반영하지는 않았음

- 사업비는 유사사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의 평균 사업비 4.5백만원을 적용함
 - － 2027년 도교통계획이 수립된 이듬해인 2028년과 2029년 각각 113개, 113개 시군구에서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유사사례: 시·군·구 단위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비(백만원)
화천군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	22
장성군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7	26
김해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6	99
정읍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6	30
가평군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6	50
공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2	40
평균		45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시·군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군교통계획 수립비용	—	—	5,085	5,085	—	10,170

주 1. 개정안에 따라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226개 시·군에서 2개년에 걸쳐 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안 제19조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절감비용을 반영하지는 않았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사업비로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226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절감비용을 반영하지는 않았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